긴급입찰 사유서

사 업 명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수요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기타공공기관)
담당부서	교육정보센터(051-720-6896)

[긴급입찰 사유]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제4호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4조제1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제27조 제3항제3호,제7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여 민간 자율성 확보를 기조로 하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전면 확대되어 시행된 이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 사업자를 포함한 11개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어 연계시스템을 운영 중인 상황임.

○ 국내 및 글로벌 사업자까지 지속적으로 연계 대상과 범위는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데이터 연계 규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연간 50만건 이상의 게임물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연계 지원 및 유지관리 전문 용역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임.

○ 위의 사유에 따라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본 용역의 최단기간 사업자 선정이 요구됨에 따라 당해 사업을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